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5.2.27.)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사유 및 기간, 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 절차 등을 규정(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기관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등 파견 사유 및 파견 기관별로 그 기간을 규정

2)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파견할 경우, 파견받을 기관장의 사전 요청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등 파견 절차를 규정

3)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되는 교육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4)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파견되는 경우, 파견기간은 2년 이내

- 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5) 사립학교 법인은 파견받은 교원의 파견사유 소멸 시 원 소속기관 임
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파견된 교사의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함
-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첨부하게 하는 서식에 관한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단서조항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육공무원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소속 교원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6개월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교원을 파견할 때에는 파견받을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교육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파견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

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파견사유 및 기간에 대해 관할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에 따른다.

⑨ 다른 학교법인의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원래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⑩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파견되는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3조 단서 중 “보고는”을 “보고에 필요한 경우”로, “첨부하게”를 “추가로 첨부하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u> <u>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u> <u>2. 소속 교원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u> <u>3.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u> <u>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u>

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6개월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교원을 파견할 때에는 파견받을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교육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파견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파견사유 및 기간에 대해 관할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⑧ <u>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에 따른다.</u> ⑨ <u>다른 학교법인의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원래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u> <u>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u> <u>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u> ⑩ <u>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파견되는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u>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 -----
---	---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 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 <u>보고</u>는 관할 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u>첨부하게</u> 할 수 있다.	----- ----- ---. ----- ----- <u>보고에 필요한</u> <u>경우</u> ----- <u>추가로 첨부하게</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89